




기안자	지경과 한 백	전화번호	306	공보	0
행정	남인	시경	파장	내무	국무
				10.14	
합조자					고준
서명					민준
기년월일	1964. 10. 12	시년월일	10. 10. 16		
분류기호	서울특별시 (제) 제 2호				
경수참	유신조	西大門 市長 市長			
제목	身元證明願 發給에 對한 復權				
서울호방 844.3-121 호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回示하니 業務에 籍誤 없도록 할 것. 1. 復權은 刑의 言渡의 效力으로 因하여 喪 失 또는 停止된 資格을 回復하는 것이나 刑의 言渡에 依한 既成의 效果는 變更됨이 없는 것 이므로 刑의 言渡는 受刑事處의 復 權令에 依하여 復權되었는지 赦免된 事由는 尙存되고 있는 것이니 上記 事實은 身元證明 願에 記載하여 發給할 것. 是.					

1016  




서 대 문 구

서서호병 1821 (72-3075)

34. 10. 8.

경유 서정과

수산 서울특별시 시장 귀하

참조 서정과

제목 신원증명 발급에 대한 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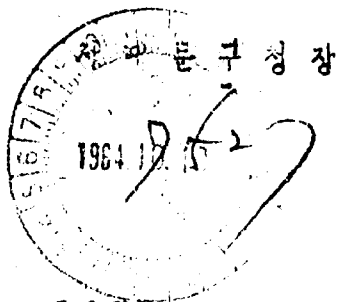
신원증명 발급사수에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 하오니 조속히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64. 8. 14자각령 제1415호에 의한 복권령에 의하여 자격이  
회복된 자에게 신원증명을 발급함에 있어, 복권령시행 이전에 범한 전과  
사실을 기재할 것이냐의 여부

2. 서울특별시 이규 제12호(64. 7. 2)에 의하면 복권을 예외  
사항에 해당치 않음으로 전과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것이나 복권의 존립  
위주로 보아서는 기재하지 않아야 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 여하 ?

끝.

117



116



413